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사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혁신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중 혁신경영 및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동력 창출가능성을 갖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개요

사업목적	혁신경영 및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동력 창출가능성을 갖춘 기업 발굴·육성
선정대상	혁신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선정규모	3개사 내외(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정기간	지정년도로부터 2년
공고기간	2026. 03. 09.(월) ~ 2026. 04. 10.(금)
접수기간	2026. 03. 09.(월) ~ 2026. 04. 10.(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www.jblc.or.kr)

2

신청자격

구분	신청기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
연 구 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형태	법인기업
매출기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기준	전년도 수출액 50만불 이상
업 력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고용기준	근로자(정규직) 10인 이상(공고일 기준)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신청제한 사 항	강소기업(졸업포함)

[용어의 정의]

- ①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②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③ **등록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 ④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및 제17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④ **고용증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
- ⑤ **정규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
- ⑥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3

지원 프로그램

□ 전용 프로그램

구분	연번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술화 지원	1	기술개발 지원사업	○ 수출지향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1.5억원 이내
사업화 지원	2	자율프로그램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공정개선 지원 ○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 글로벌 표준 충족을 위한 산업재산권 인증 취득 지원 ○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 기획 등 컨설팅 지원	1억원 이내
성장 지원	3	ESG 지원사업	○ ESG 역량진단 및 교육 ○ ESG 취약항목 개선지원	신규기업 의무지원
역량 강화	4	혁신포럼	○ 최고경영자 리더스 혁신포럼 운영	-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 성장사다리 신입사원 교육 ○ 성장사다리 중간관리자 역량플러스 교육 ○ 성장사다리 최고경영자 교육	-
기업 지원 활동	5	네트워크 활성화	○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등	상시
		기업전담 컨설턴트 매칭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지정 지원	신규기업 의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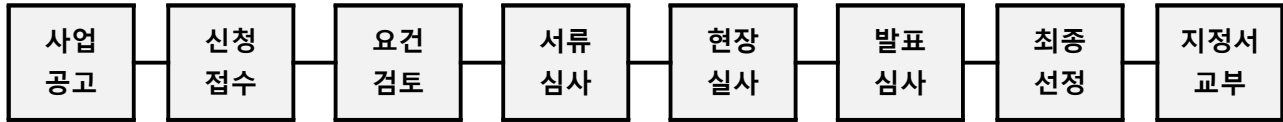
*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를 통하여 지정기업 선정평가 진행,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

□ 연계 프로그램

지원명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융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기업당 최대 7억
	이차보전	2.0%	3.0%
○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상세내용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참고			

4

선정절차



구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배점	110점(40%)	-	100점(60%)
선정	40순위까지(지역할당포함)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심사장소	(재)전북테크노파크	신청기업 지정장소	(재)전북테크노파크
심사인원	도내·외 전문가	(재)전북테크노파크	도내·외 전문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소요시간	-	기업별 30분 정도	기업별 30분 정도
참석대상	-	실무책임자 외	대표자(전문경영인) 외 (제한인원 : 3명)
기타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제외 - 과락점수: 40점 미만	-	감점제도 운영

* 심사 일정 및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 심사방법: 신청요건 확인 및 제출된 제반서류 기반으로 한 정량심사
- 심사항목: 기업혁신기반 50점, 재무건전성 50점, 가산점 10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혁신기반	○ 일반현황: 신청기업의 업력,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소재, 종사자 수 등	15
	○ 수출역량: 신청기업의 수출액	10
	○ 연구역량: 연구개발 부서 현황,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10
	○ 혁신인증, 품질관리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15
재무건전성	○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50
가산점	○ 정부(장관상 이상)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포상, 수출의 탑 수상 ○ 기업인증,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	10
합계		110

※ 가산점(최대 10점)

구분	배점	지표설명										
○ 최근 3년(2023년~공고일기준)내에 포상 및 표창 현황 - 정부(장관상 이상)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2	<table border="1"> <tr> <td>건수</td> <td>3건 이상</td> <td>2건</td> <td>1건</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5점</td> <td>1점</td> </tr> </table>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2점	1.5점	1점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2점	1.5점	1점									
○ 최근 3년(2023년~공고일기준) 수출의 탑 수상	2	<table border="1"> <tr> <td>건수</td> <td>5백만불 이상</td> <td>3백만불</td> <td>2백만불</td> <td>1백만불</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5점</td> <td>1점</td> <td>0.5점</td> </tr> </table>	건수	5백만불 이상	3백만불	2백만불	1백만불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건수	5백만불 이상	3백만불	2백만불	1백만불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 기업인증 현황(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	<table border="1"> <tr> <td>건수</td> <td>3건 이상</td> <td>2건</td> <td>1건</td> </tr> <tr> <td>점수</td> <td>2점</td> <td>1.5점</td> <td>1점</td> </tr> </table>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2점	1.5점	1점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2점	1.5점	1점									
○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2023년~공고일기준)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2	실시유형: 1점/건(최대 1점) 대상인원: 1점/인(최대 1점)										
○ 육아휴직 실시기업 / 유연근무제 실시기업 - 최근 3년(2023년~공고일기준)내에 실시인원 기준	2	실시유형: 0.5점/건(최대 1점) 대상인원: 1점/인(최대 1점)										
가산점 소계	10											

2 현장실사

- 실사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 실사장소: 신청기업 현장사무소
- 소요시간: 총 30분 내외(기업면담 10분, 현장확인 10~20분)
- 실사대상: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 실사항목: 현장확인 및 검증, 기업환경, 경영상태, 연구 및 생산능력 등

구분	항목	세부내용
경영환경	기업환경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사무환경
		주변환경 및 청결 상태 등
	생산관리	생산·제조설비, 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제조시설 위험물 관리 및 안전대책 등
연구소	연구개발 인프라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 공간 운영 상태
		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가용 여부 및 유지상태

3 발표심사

- 심사방법: CEO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장소: (재)전북테크노파크
- 소요시간: 총 3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 심사항목: CEO의 경영전략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한 사업수행 가능성, 경영혁신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가능성	목표적합성, 성장계획의 충실성, CEO의 의지	25
경영혁신성	경영계획, 조직관리, 일자리 창출, 공공적 기업활동	25
기술성	기술의 차별성, 연구역량, 기술력 확보	25
시장성	시장경쟁력, 시장확대 능력, 시장의 다양성	25
합계		100

※ 감점사항 : 대표자 미참석(- 5점), 대리발표(- 2점)

4 최종선정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결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심의 후 최종 선정

구분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배점(가중치)	110점(40%)	-	100점(60%)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03. 09.(월) ~ 2026. 04. 10.(금)
- 접수기간: 2026. 03. 09.(월) ~ 2026. 04. 10.(금),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처: www.jbfc.or.kr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
 - 세부사업 신청방법



6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수 제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혁신기업 신청서 ※ 제출기준: 한글파일(***.HW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혁신기업 서류심사 작성양식(엑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분 ※ 제출기준: 인정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국세청 홈택스(국세) / 정부 24에서 발급(지방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22년, '23년, '24년, '25년) ※ 제출기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5년도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 '24년, '25년, '26년) ※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기준 : ('23~'25년) 12월말 기준, 26년(공고일 기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23년, '24년, '25년) ※ 직접수출 인정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분 ※ 간접수출 인정기준: KNET 발행분(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해당시 제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인증 취득 증빙 서류(Inno-biz, Main-biz, Venture)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취득 증빙 서류(HACCP, ISO, QS, TL 등)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 서류(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디자인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가산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장관상 이상)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포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의 탑 수상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증 지정서 ※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 ※ 제출기준: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적용 명단 포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기업(취업규칙 및 증빙서류) ※ 인정기준: 최근 3년('23년~공고일 기준)내에 실시인원 ※ 제출기준: 공문 등 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적용 명단 포함

7

제외대상

연번	구분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역행기업(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 진입불가)	내부검토
2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
3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완납증명서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NTIS 제재조치 여부
5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이 확인된 경우	기업정보시스템
6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완전자본잠식)	재무제표 확인

8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전산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준 또는 인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 제출시 해당 심사항목은 “0”점 처리됨
 - 전산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전북테크노파크와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외부로부터 청탁(부탁 포함)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내에서 상위단계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하위단계에서는 조기 졸업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돈육기업 → 도약기업 → 선도기업 → 혁신기업 → 강소기업

9

문의 및 상담

소속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팀	유형식	선임연구원	063-219-2137	tpsik@jbtp.or.kr
	이호형	주임연구원	063-219-2141	bca1200@jbtp.or.kr
	이주은	연구원	063-219-2134	idoo@jbtp.or.kr